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3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제21조의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신설하고자 함

* 제정: '21.9.24, 시행: '22.3.25.

2.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 변경(안 제3조)
- 나.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변경(안 제4조)
- 다. 이사장·대표이사 명칭을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 (안 제8조)
- 라.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요건 변경(안 제17조제3항)
- 마.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18조 및 제19조)
- 바.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부터 안 제25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22.3.24. ~ 4.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를 “서울특별시 내”로, “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 법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책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운영 등)”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 「민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를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을 “시장의 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과 대표이사는”을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재단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③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표이사는”을 “원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표이사가”를 “원장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과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 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을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2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내부위원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정책위원회 구성기준은 법 제28조제3항을 따른다.

제21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
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
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
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u>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u> <u>내-----</u> ----- ----- ----- ----- ----- ----- <u>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u>.</p>
<p>제3조(적용범위) <u>시 사회서비스원</u>(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u>민법</u>」과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및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u>」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u>사회서비스원의 설립</u>)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u>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u>민법</u>」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4조(설립) 사회서비스원은 「<u>민</u></p>	<p><삭 제></p>

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

제4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

---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
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
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
하는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다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
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
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
·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
·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
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
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
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
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책무) 사회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법, 「민법」

-----.

제7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 2.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u>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u>사회서비스원-----</u> ----- ----- <u>시장의 허가를</u> ----- -----.
③ <u>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u>사회서비스원-----</u> ----- ----- -----.
제8조(임원) ① <u>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u>	제8조(임원) ① <u>재단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u>
② <u>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 한다.</u>	② <u>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법 제 14조에 따른 -----</u> ----- ----- ----.
③ <u>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u>	③ <u>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p>④ (생 략)</p> <p><u>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u>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u></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u>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u></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u>원장은 -----</u></p>
<p>② (생 략)</p>	<p>-----</p>
<p>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u>이사장과</u>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p>	<p>-----</p>
<p>② <u>이사장은</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p>
<p>③ <u>이사장이</u>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p>
<p>④ (생 략)</p>	<p>-----</p>
<p>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p>	<p>제11조(직원) -----</p>

<p>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대표이사</u> 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p>	<p>----- <u>원장이</u> ----- -----.</p>
<p>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생 략)</p>	<p>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 <u>법 제29조 및 「지방자</u> <u>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u> <u>에 관한 법률」----- ----- ----- -----.</u></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 ② (생 략) ③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u>다</u> <u>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u> <u>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u> 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 탁할 수 있다.</p>	<p>제17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법</u> <u>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u> ----- ----- ----- -----.</p>
<p><u><신 설></u></p>	<p>제18조(성과계약) ① <u>법 제21조에</u> <u>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u> <u>과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u> <u>각각 서명 · 날인함으로써 계약</u> <u>이 성립한다.</u> ② <u>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u> <u>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u></p>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

<신 설>

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신 설>

제2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서울 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내부위원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정책위원회 구성기준은 법 제28조제3항을 따른다.

<신 설>

제21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신 설>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

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신 설>

<신 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 제19조 (생략)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20조 ~ 제25조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발생 예상됨
- 조례안 제4조 사업범위가 일부 변경 및 확대되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범위)

- ① 의원 · 위원회 · 시장 ·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소액(연평균 5억 미만)
-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업범위가 변경·확대 되었으나 실제 사업 시행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예측되지 않아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박준형(02-2133-7748)